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운영회 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2175
------	------

발의일자 : 2021. 12. 23.

발 의 자 : 운영회, 김경완

강수정, 조윤형 의원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기록투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규정 등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할 수 있는 근거 명시(안 제12조)

나. 표결 시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 원칙(안 제47조)

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심사규정 반영 (안 제65조)

라. 주민조례청구 이의신청 및 수리·각하의 심의·결정을 위해 의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 (안 제66조, 제67조)

마.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의견제출 규정 신설(안 제90조, 제91조, 제92조)

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변경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 1) 일부개정 조례안 : 별도 첨부
- 2) 신·구조문대비표 : 별도 첨부
- 3) 입법예고 : 2021. 12. 23. ~ 12. 28.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1조”를 “제83조”로 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의장과 부의장”을 삽입한다.

제18조 앞에 “제2절 의안 및 동의”를 삭제한다.

제27조를 제34조로 하고, 제21조를 제27조로 하며, 제19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0조의2를 제11조로 한다.

제65조 앞에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삭제한다.

제27조 앞에 “제3절 발 언”을 삭제한다.

제76조를 제97조로 하고, 제64조를 제76조로 하며, 제55조를 제64조로 하고, 제48조를 제55조로 하며, 제41조를 제48조로 하고, 제33조를 제41조로 하며, 제26조를 제33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6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6조를 제18조로 하며, 제14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2조를 제14조로 하며,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3장제1절 앞에 “제3장 회 의”를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1절 개의.휴회.회기.선포.의사일정 등”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회 의”를 삽입한다.

제13조 앞에 “제1절 개의.휴회.회기.선포.의사일정 등”을 삽입한다.

제16조(중전의 제14조)제2항 중 “제11조의규정”을 “제13조의 규정”으로, “법 제63조제1항”을 “법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앞에 “제2절 의안 및 동의”를 삽입한다.

제44조 앞에 “제5절 회의록”을 삭제한다.

제37조 앞에 “제4절 표결”을 삭제한다.

제73조 앞에 “제8장 질 서”를 삭제한다.

제81조를 제88조로 하고, 제68조를 제81조로 하며, 제56조를 제68조로 하고, 제49조를 제56조로 하며, 제42조를 제49조로 하고, 제35조를 제42조로 하며, 제28조를 제35조로 한다.

제83조를 제7장제93조로 하고, 제70조를 제83조로 하며, 제58조를 제70조로 하고, 제50조를 제58조로 하며, 제43조를 제50조로 하고, 제36조를 제43조로 하며, 제29조를 제36조로 한다.

제84조를 제100조로 하고, 제71조를 제84조로 하며, 제59조를 제71조로 하고, 제51조를 제59조로 하며, 제44조를 제51조로 하고, 제37조를 제44조로 하며, 제30조를 제37조로 하고,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로 하며,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를 각각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로 한다.

제73조를 제94조로 하고, 제61조를 제73조로 하며, 제53조를 제61조로 하고, 제46조를 제53조로 하며, 제39조를 제46조로 하고, 제32조를 제39조로 하며, 제25조를 제32조로 하고, 제19조의5를 제25조로 한다.

제85조를 제101조로 하고, 제72조를 제85조로 하며, 제60조를 제72조로 하고, 제52조를 제60조로 하며, 제45조를 제52조로 하고, 제38조를 제45조로 하며, 제31조를 제38조로 하고, 제24조의2를 제31조로 한다.

제34조 앞에 “제3절 발 언”을 삽입한다.

제37조(중전의 제30조) 제1항 단서 중 “제32조의2의규정”을 “제40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48조 앞에 “제4장 위 원 회”를 삭제한다.

제74조를 제95조로 하고, 제62조를 제74조로 하며, 제54조를 제62조로 하고, 제47조를 제54조로 하며, 제40조를 제47조로 하고, 제32조의2를 제40조로 한다.

제44조 앞에 “제4절 표결”을 삽입한다.

제47조(중전의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제47조(중전의 제4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7조(중전의 제40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47조(중전의 제40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1조 앞에 “제5절 회의록”을 삽입한다.

제54조(중전의 제4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게재”를 “공개”로 한다.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앞에 “제4장 위 원 회”를 삽입한다.

제82조 및 제83를 제89조 및 제93조로 하고, 제69조를 제82조로 하며, 제57조를 제69조로 하고, 제49조의2를 제57조로 한다.

제75조를 제96조로 하고, 제63조를 제75조로 하며, 제54조의2 및 제65조를 각각 제63조 및 제77조로 하고, 제77조 및 제78조를 각각 제98조 및 제99조로 하며, 제65조의2를 제78조로 한다.

제79조 및 제80조를 각각 제86조 및 제87조로 하고,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제79조 및 제80조로 하며, 제65조, 제66조 및 제6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

제66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②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67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5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앞에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를 삽입한다.

제77조 앞에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을 삽입한다.

제68조 앞에 “제7장 의원의 청가·결석·사직 및 자격심사”를 삭제한다.

제81조 앞에 “제7장 의원의 청가·결석·사직 및 자격심사”를 삽입한다.

제83조(중전의 제70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94조 앞에 “제8장 질 서”를 삽입한다.

제86조(중전의 제79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한다.

제87조(중전의 제80조) 제1항 전단 및 같은 조(중전의 제80조) 제2항 본문 중 “제79조”를 각각 “제86조”로 한다.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의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이상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정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해촉·제척·회피) ①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92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00조 앞에 “제9장 보 칙”을 삽입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1조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10조의2 (생 략) <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회 의</p> <p>제1절 개의.휴회.회기.선포.의사일정 등 <신 설> <신 설></p> <p>제11조 ~ 제13조 (생 략)</p> <p>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생 략)</p> <p>②의장은 제11조의규정에 의한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때까지 법 제63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 제83조 -----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의장과 부의장</p> <p>제11조 (현행 제10조의2와 같음)</p> <p>제12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 <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회 의</p> <p>제1절 개의.휴회.회기.선포.의사일정 등</p> <p>제13조 ~ 제15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와 같음)</p> <p>제16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3조의 규정----- ----- 법 제72조제1항----- -----.</p>

③·④ (생 략)

제15조 ~ 제17조 (생 략)

제2절 의안 및 동의

<신 설>

제18조 ~ 제26조 (생 략)

제3절 발 언

<신 설>

제27조 ~ 제29조 (생 략)

제30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의원은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2조의2의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 략)

제31조 ~ 제33조 (생 략)

제35조·제36조 (생 략)

제4절 표결

<신 설>

제37조 ~ 제39조 (생 략)

제40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

③·④ (현행과 같음)

제17조 ~ 제19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2절 의안 및 동의

제20조 ~ 제33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3절 발 언

제34조 ~ 제36조 (현행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와 같음)

제37조(의제외 발언의 금지) ① -----

----- 제40조의 규정-----

-----.

② (현행과 같음)

제38조 ~ 제41조 (현행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와 같음)

제42조·제43조 (현행 제35조 및 제36조와 같음)

<삭 제>

제4절 표결

제44조 ~ 제46조 (현행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와 같음)

제47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 또는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

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선거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무기명 투표로한다.

제41조 ~ 제43조 (생략)

제5절 회의록

<신설>

제44조 ~ 제46조 (생략)

제47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 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개한다. 그러나

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삭제>

③-----

----- .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삭제>

제48조 ~ 제50조 (현행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와 같음)

<삭제>

제5절 회의록

제51조 ~ 제53조 (현행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와 같음)

제54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금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할 수도 있다.

②의원이 제1항에 따라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아니된다.

③ ~ ⑥ (생략)

제4장 위원회

<신설>

제48조 ~ 제55조 (생략)

<신설>

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공개-----

-----.

③ ~ ⑥ (현행과 같음)

<삭제>

제4장 위원회

제55조 ~ 제64조 (현행 제48조부터 제55조까지와 같음)

제65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①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p><신 설></p>	<p>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p> <p>④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1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p> <p>제66조(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p> <p>②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p>
--------------------	--

<신 설>

제56조 ~ 제59조 (생 략)

<신 설>

제60조 ~ 제64조 (생 략)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
장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협
의하여 정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19조제
1항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
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
을 따른다.

제67조(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
2조 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
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②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
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③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
정절차는 제55조의3제2항 및 제3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 ~ 제71조 (현행 제56조부터 제
59조까지와 같음)

제5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제72조 ~ 제76조 (현행 제60조부터 제
64조까지와 같음)

<삭 제>

<신 설>

제65조 ~ 제67조 (생 략)

제7장 의원의 청가·결석·사직 및
자격심사

<신 설>

제68조·제69조 (생 략)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의장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
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
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
를 제출하게 한다.

② (생 략)

제71조·제72조 (생 략)

제8장 질 서

<신 설>

제73조 ~ 제78조 (생 략)

제7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의장은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
(이하 “징계 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제6장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답변

제77조 ~ 제80조 (현행 제65조부터 제
67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7장 의원의 청가·결석·사직 및
자격심사

제81조·제82조 (현행 제68조 및 제69
조와 같음)

제83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 ①-----

② (현행과 같음)

제84조·제85조 (현행 제71조 및 제72
조와 같음)

<삭 제>

제8장 질 서

제94조 ~ 제99조 (현행 제73조부터 제
78조까지와 같음)

제8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법 제98조-----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생략)

③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④·⑤ (생략)

제8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제7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같은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

②제79조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

-----.

② (현행과 같음)

③-----

-----.

④·⑤ (현행과 같음)

제8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① 제86조 -----

-----.

②제86조 -----

계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회의의 집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81조·제82조 (생략)

<신설>

----. -----

-----.

제88조·제89조 (현행 제81조 및 제82조와 같음)

제9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의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7명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정성,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

<신 설>

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해촉·제척·회피) ①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②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제2항

<p><신 설></p> <p>제83조 (생 략)</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84조·제85조 (생 략)</p>	<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p> <p>제92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p> <p>제93조 (현행 제83조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9장 보 칙</p> <p>제100조·제101조 (현행 제84조 및 제85조와 같음)</p>
--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7호, 2021. 10. 19., 일부개정]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제83조(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4조(회의록) ① 지방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의원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지방의회의 의장과 지방의회에서 선출한 지방의회의원 2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회의 결과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지방의회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495호, 2021. 10. 19., 제정]

제11조(이의신청 등)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 2.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 3.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 4.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 5.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 기간에 받은 서명
- 6.제9조제2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서명 취소를 요청한 서명
- 7.강요·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서명

②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④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결정으로 청구인명부에 서명한 청구권자의 수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청구요건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대표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보정하게 할 수 있다.

- 1.시·도: 15일 이상
- 2.시·군 및 자치구: 10일 이상

⑤ 제4항에 따라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제출, 공표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은 “제11조제4항에 따른 보정 기간”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 1.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 ① 지방의회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7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